

소규모펀드 수시공시

『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』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소규모펀드 공시: 법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

※ 투자신탁의 경우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처리방안결정사실(방법)공시 제외

1. 소규모펀드 비율 공시

보고서코드	회사코드	공모추가형 펀드수	소규모 펀드수	부실자산 펀드수	증투법 펀드 중 (구)개인연금펀드수	소규모펀드 비율	제출기준일
GSMC	A01025	33	8	5	0	10.71	2017-06-30

2. 소규모펀드(1개월) 여부 공시

	펀드명	제출일자	발생일자	원본액	순자산총액	기준가격
1	프랭클린 지속성장 증권투자신탁(주식) Class A	2017-07-03	2017-06-03	26,002,802	27,026,292	1,039.36
2	프랭클린 지속성장 증권투자신탁(주식) Class A-e	2017-07-03	2017-06-03	74,650,010	76,741,018	1,028.01
3	프랭클린 지속성장 증권투자신탁(주식) Class C	2017-07-03	2017-06-03	4,765,262,565	5,063,885,455	1,062.67
4	프랭클린 지속성장 증권투자신탁(주식) Class C-e	2017-07-03	2017-06-03	3,011,350	3,205,210	1,064.38
5	프랭클린 지속성장 증권투자신탁(주식) Class S	2017-07-03	2017-06-03	48,248,071	47,061,501	975.41
6	프랭클린 지속성장 증권투자신탁(주식) Class C-P	2017-07-03	2017-06-03	21,167,890	22,512,723	1,063.53

프랭클린템플턴 투신운용